##### 국가장학금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제출서류

###### 제출서류

*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*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*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
  + ※이혼, 혼외 자녀, 전혼 자녀, 사망 자녀, 입양 취소,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[가족관계증명서(상세)]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요청 근거: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4(자료요구 및 질문)

* + ※ 단,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[가족관계증명서(일반)]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**구분** | **결혼 여부** | **부** | **모** | **제출서류** | **추가서류** | **비고**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필수 서류** | **미혼** | 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주1) |  |  |
| 생존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 |  |
| 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 |  |
| 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 |
| 생존 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| 이혼 후 관계단절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 |  |
| 이혼 후 관계단절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폐쇄인정주5) |
| 이혼 후 관계단절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 |
| 이혼 후 관계단절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 |
| 이혼 후 관계단절 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주민등록초본주7) |  |
| 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 |  |
| 사망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폐쇄인정주5) |
| 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 |  |
| 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폐쇄인정주5) |
| 사망 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폐쇄인정주5) |
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주민등록초본주7) |  |
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폐쇄인정주5) |
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| 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 |
| 실종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+ 주민등록등본주4) +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주민등록초본주7) |  |
| 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폐쇄인정주5) |
| 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 |
| 실종 | 재외국민 ·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재외국민 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| **기혼** | 배우자 생존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주1) |  |  |
|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| |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+주민등록등본주4)+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) |  |  |
| 배우자 사망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주8) |  |  |
| 배우자 실종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주2) |  |  |
| 배우자가 재외국민 · 외국인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 외국인 증빙서류주3) |  |

* 서류 확인 시, **‘학자금 신청일’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**
* **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'(필수서류)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**
* **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‘정부24’(**[**www.gov.kr**](http://www.gov.kr/)**), 대법원(**[**efamily.scourt.go.kr**](http://efamily.scourt.go.kr/)**)을 통해 출력 가능**  
 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
* **‘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**  
  - ‘전호주와의 관계’ 및 ‘호주승계사유’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
* ※내국인 고유번호 없음\*의 경우, 보호종료확인서, 기본증명서,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
  \*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
* 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* 주2) 실종 증빙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* 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, ①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외국인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여권사본)
* 주4) 주민등록등본: ‘학생 단독세대주’ 또는 ‘가구원과 동일세대’ 여부 확인필요
* 주5) 폐쇄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‘폐쇄’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*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·확인

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

* 주7) 주민등록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*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
| **구분** | **자격명** | **비고** | **발급처**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기초생활수급자** |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※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|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‘정부24’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/)) |
| **차상위계층** |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|
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|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|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
| 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
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
* 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,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* 기초,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) 명의의 서류 제출,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
* 장애인 증빙서류
  +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  +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/))
* 다자녀가구(학자금 신청자의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 증빙서류
  + 제출서류
    - 미혼(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: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- 기혼(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):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  +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/))
*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☞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– [장학금신청] –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

######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*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*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
 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*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(학생 포함)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* 제출방법
  + **홈페이지 업로드(빠른접수) :**  
    [장학금신청]–[서류제출현황]-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
  + **모바일 업로드(빠른접수) :**  
  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
  + ※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  + ※ 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제출기간  
  2023. 8. 17.(목) 9시 ~ 2023. 9. 21.(목) 18시
  + ※ ’23. 8. 22.(화)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
  +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  +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.
  +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.
*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
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.